

가계금융·민사집행

생계비계좌는 시행 중이고, 초과액 분리송금은 아직 입법예고다

250만원 보호한도와 전액 입금 거절 문제, 7월 개정안이 바꾸는 범위

현행 민사집행법·시행령과 법무부의 2026년 7월 입법예고를 대조해 이미 시행 중인 보호한도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리송금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발행
2026.08.21

연번
2026_47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생계비계좌의 현행 규칙과 초과액 분리송금안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고 본다. 생계비계좌와 250만원 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반면 분리송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개정안은 입금 편의를 높이지만 관리계좌로 간 초과액에 생계비계좌와 같은 압류금지 지위를 주지 않는다.

확정된 사실

생계비계좌와 250만원 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도 초과분을 일반 관리계좌로 보내는 방식은 2026년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안입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현행 시행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시행령
잔액 한도	250만원	계좌 잔액
월 입금 한도	250만원	월 누적입금액
개설 수	1인 1계좌	전 금융기관 통틀어
공개 계좌 수	531,174개	2026년 6월 23일
분리송금	입법예고	7월 24일~9월 2일

개정법은 생계비계좌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인이 취급기관 전체를 통틀어 한 계좌만 개설하도록 합니다.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이 취급기관에 포함됩니다.

법무부 개정안은 같은 금융회사에 일반 입출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한도 안 금액은 생계비계좌로, 초과액은 관리계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아직 공포·시행된 규칙이 아닙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현행 제도는 입금 뒤 잔액과 해당 월 누적입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봅니다. 둘 중 하나의 남은 폭보다 새 입금액이 크면 전액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액 180만원, 월 누적 220만원일 때 60만원이 들어오면 월 기준 남은 폭은 30만원입니다. 현행은 전액 거절될 수 있고 예고안은 30만원을 생계비계좌, 나머지 30만원을 관리계좌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관리계좌는 편의를 위한 일반 입출금계좌입니다. 개정안은 그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꾸지 않으므로 초과액이 자동으로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1인 1계좌와 잔액·월 입금액을 전산으로 통제합니다. 예고안이 시행되면 관리계좌 지정, 초과액 분기와 이용자·송금인 고지가 추가됩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큰 급여·매출대금·가족송금을 받는 이용자는 지금 송금 실패 뒤 금액을 나누거나 다른 계좌를 알려야 합니다. 분리송금이 시행되면 재송금 부담은 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생계비계좌에 들어가는 30만원만 그 계좌의 명시적 보호범위에 들어갑니다. 관리계좌의 30만원은 일반예금 규칙과 집행절차를 따릅니다.

보호액과 일반예금을 같은 성공 메시지로 보여 주면 법적 지위가 같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화면과 거래명세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월 잔여한도	30만원	250만원-220만원
생계비계좌	30만원	예고안 가정
관리계좌	30만원	일반예금 지위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공포와 시행일 입법예고는 확정 법령이 아니며 의견수렴 뒤 문구나 준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초과액의 지위 표시 앱·창구·문자에서 보호액과 관리계좌 일반예금을 구분하는 방식은 예고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03 두 문턱 계산 잔액과 월 누적입금액 중 작은 잔여한도를 즉시 보여 주는 공통 화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4 집행 단계의 접근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의 해제·범위변경 절차와 처리기간을 이번 개정안이 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 국민
- 잔액과 해당 월 누적입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큰 입금 전 두 잔여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계산하고 공포 전에는 분리송금을 이용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송금 실패 화면·거래명세·반환시각을 보관합니다.

- 대상회사
- 생계비계좌 보호액과 일반 관리계좌 초과액을 한 화면에서 분리 표시합니다.
 - 전액 거절과 분리송금의 적용일·반환코드·월 누적 기준을 이용자와 송금인에게 설명합니다.

- 당국
- 최종 조문·시행일·전산 적용일을 함께 공개합니다.
 - 금융회사별 거절·분리송금 건수와 민원 유형을 같은 정의로 집계합니다.

· 최종 조문과 시행일, 보호액·초과액 표시와 금융회사 전산 적용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예고안대로 신속 시행

B

표시·통계를 보완해 시행

· 의견수렴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 공포문과 금융회사 전산 공지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상품 보통예금

금융상품 정기예금

제도와 규칙 예금자보호제도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확인한 사실·숫자 8건

8 확인 항목	7 1차 자료	1 파생 계산	9월 2일 뒤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01	1차	생계비계좌의 법적 근거와 1인 1계좌·월 입금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	원문 열기 ↗
02	1차	한도 250만원과 취급기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원문 열기 ↗
03	1차	시행범위와 적용시점 법무부 2026년 2월 2일 안내	원문 열기 ↗
04	1차	초과액 분리송금안과 공개 계좌 수 법무부 2026년 7월 24일 보도자료	원문 열기 ↗
05	1차	입법예고 기간과 제8조 제6·7항 신설안 법제처 입법예고	원문 열기 ↗
06	1차	국민참여 의견 제출 경로	원문 열기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